

제 1236 호

1986. 1. 13

발행인 : 서울특별시 영도구청  
편집인 : 서울특별시 영도구청  
인쇄 : 서울특별시 영도구청  
전화 : 735-8887

제	도시계획	공공시설	공공기관	공공
1236	호	호	호	호

# 시 보

## 차 례

◎ 고 시

제 18 호 : 개포재 4 근린공원조성계획지적승인	3
제 19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4
제 20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및 하수도) 실시계획인가변경	5
제 21 호 : 도시계획시설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결정	6
제 22 호 : 도시계획시설 (시장) 변경결정	7
제 23 호 : 도시계획시설 (공용의청사) 결정	7
제 24 호 : 도시계획시설 (공용의청사) 결정	8
제 25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	8
제 26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변경 (기간연기)	10

< 이 면 계 속 >

공									
람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2108

제 27 호 : 도시계획사업 (공용의청사) 시행인가	10
제 28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15
제 29 호 :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결정	15
제 30 호 : 주택개량재개발구역지적승인	15
제 31 호 : 주택개량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16
제 32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17
제 33 호 : 도시계획사업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시행변경인가	18
제 34 호 : 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18
제 35 호 :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변경	18
제 36 호 :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정류장, 시내버스)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20
제 37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장) 지적승인	20

◎ 공 고

제 15 호 : 도시계획사업 (하수) 실시계획공람	21
제 16 호 : 공공하수도사용개시공고 및 관계도면공람	22
제 17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시행공람	22
제 19 호 : 도로공사계획	23
제 20 호 : 도시계획사업 (유통업무설비 - 화물자동차정류장) 시행완료	23
제 22 호 : 도로공사계획	24
제 23 호 : 도시계획입안공람 (변경)	25
제 24 호 : 도시계획사업 (도매시장) 시행공람	26
제 26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완료	26
제 27 호 : 도시계획사업 (하천개수) 실시계획인가를 위한공람	26
제 28 호 : 제 2 종전기공사업체실효처분	28

◎ 구 청 공 고

성북제 3 호 : 직인개각	28
----------------	----

◎ 사 령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18 호

개포제 4근린공원 조성계획 지적승인

1. 건설부고시 제 566 호 (85.12.18)로  
결정된 우리시 관내 개포 제 4 근린  
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 4조와 도시계획법 제 13조 제 2항  
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 하연기  
동법 제 12조 제 4항의 규정에 따  
라 이를 고시한다.

2. 관내 도서는본은 서울시청공원과와  
서울시 종합건설본부 공사 5부 및 관  
할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일반  
인에게 보인다.

가. 공원조성계획 지적승인조서 1부  
나. 관계도면 1부. (도면생략)  
1986. 1. 13.

서울특별시장

조 성 계 획 총 관 표

개포 제 4 근린공원

구 분	시 설 내 용	부지면적(m <sup>2</sup> )	비율%
계		10,000	100
교통시설	산책로 및 광장	2,400	24
조경시설	파 고 라	237	2.4
휴양시설	벤 치	60	0.6
유희시설	그네, 미끄럼틀, 조합놀이대, 시소, 모래사장	900	9
편익시설	음 수 대	10	0.1
관리시설	벤스, 조명등, 휴지통, 화장실	106	1
기타녹지	수목식재, 잔디광장	6,287	62.9

시 설 계 획

시설종류	번호	시 설 명	수 량	단위	부지면적 (m <sup>2</sup> )	시설규모 (m <sup>2</sup> )	
						바닥면적	연면적
계					10,000		
교통시설		소 계			2,400		
		산책로, 광장	1	식	2,400		

시설종류	번호	시설명	수량	단위	부지면적 (㎡)	시설규모 (㎡)	
						바닥면적	연면적
조경시설		소계			237		
		파고라	6	동	237		
휴양시설		소계			60		
		벤취	60	개	60		
유희시설		소계			900		
		그네	2	개	30		
		미끄럼틀	2	"	6		
		조합놀이대	1	"	200		
		시소	2	"	6		
편익시설		모래사장	658	㎡	658		
		소계			10		
		음수대	2	개	10		
		음수대			106		
관리시설		담장	44	m	88		
		조명등	21	개	-		
		휴지통	10	"	-		
		화장실	1	동	18		
기타시설		소계			6,287		
		수목식재장		주	3,787		
		잔디광장		㎡	2,500		

◎서울특별시고시제 19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적승인

1. 건설부 고시 제 561호(85.12.19)로 결정·고시된 우리시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조의 권한위임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6. 1. 13.

서울특별시장

○ 도로 지적승인 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시 점	종 급	비 고
가정	대로	1	53	35	1,400	문래동광장	신길광장	
변경	"	"	"	"	1,550			
○ 도로 지적승인 도면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p>◎서울특별시고시제 20 호</p> <p>도시계획사업 ( 도로 및 하수도 )</p> <p>실시계획인가 변경고시</p>					<p>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1986. 1. .</p> <p>서울특별시장</p> <p>다 음</p>			
<p>1. 서울특별시 고시 제 618호(85.10.21)로 공람공고 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802 호 (85.11.29)로 인가 고시된 개봉 3거리 - 강서로간 도로개설공사의 고시안 내용중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변동과 실제공사를 참작한 공사기간 조정을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인가 하였기, 도시계획변경 제 26 조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건설관리과와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p>					<p>1. 사업시행지 : 개봉 3거리 - 강서로간</p> <p>2. 사업의 종류및명칭 : 개봉 3거리 - 강서로간 도로개설공사</p> <p>3. 사업의 규모 :</p> <p>도로개설 B = 20 m L = 360 m</p> <p>하 수도 D = 450 L = 102.5 m</p> <p>D = 600 L = 505 m</p> <p>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p> <p>5. 사업기간 : 당초 85.6.5 - 85.12.1 변경 85.6.5 - 86. 2.28</p> <p>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p> <p>7.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주소성명 : 별첨 토지조서, 건물조서</p>			
건 물 조 서								
번 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	실 제 이용상황	소유자주소성명	소유권이외
	동명	지번					관계인주소성명	의권리명세
1	고척동	98-24	점포	시멘트벽와 습	63.24		이종홍 고척동 98-24	

도 지 조 서										
번 호	소재지		지 목	지 적	면 적	입 입	실 제 이 용 상 황	소유자 주소 성명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명 세
	동 명	지 변						관 계 인 주 소 성 명		
1	개봉동	157	대	830	830	도로	한일공업(주)	개 봉 동 157		
2	"	157-24	대	162	162	"	"	"		
3	"	157-24	대	1	1	"	"	"		
4	"	157-7	도로	493	493	"	"	"		
5	고척동	97-20	대	55	55	"	"	"		
6	"	94-3	대	830	830	"	"	"		
7	"	97-18	대	836	836	"	"	"		
8	"	98-121	대	36	36	대지	밀 알 (주)	고 척 98-1		
9	"	128-6	도로	13	13	도로	김 대 환	서울용산구이촌동 301의 170반도아파트 1동 707호		
10	"	124-6	도로	40	40	"	임강자 김대환	서울용산구보광동 3 서울용산구이촌동 301의 170반도아파트 1동 703호		
<p>○ 서울특별시고시제 21 호</p> <p>도시계획시설(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결정 고시</p> <p>1. 우리시 도시계획시설(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조 제 1항에 의거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p> <p>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강남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1986. 1. 13.</p> <p>서울특별시 장</p> <p>○ 결정조서</p>										
구 분	시 설 명			위 치		규 모(m)	비 고			
신 설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강남구일원동 4-5일대		87,800				
결성도면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22 호**  
**도시계획시설(시장)변경결정고시**

1. 우리시 도시계획시설(시장)을 도시계획법 제 12조제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7조의 2제 3호와 제 6조제 1항에 의거 변경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제 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관리과와 동대문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6. 1. 13  
 서울특별시장

○ 변경결정조서

구 분	시 설 명	위 치	규 모 (㎡)	비 고
변 경	시 장	동대문구면목동 750-7	4,114.11	총건축물 (지하 1~지상 5층) 건축연면적 25,689.34 ㎡중 시장연면적 8,228.22 ㎡→ 4,114.11 ㎡ (지상 1층)

○ 변경결정도면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23 호**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결정고시**

1. 우리시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을 도시계획법 제 12조제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조제 1항에 의거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제 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강서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6. 1. 13  
 서울특별시장

○ 결정조서

구 분	시 설 명	위 치	규 모 (㎡)	비 고
신 설	공용의청사	강서구마곡동 304 일대	50,000	면허시험장

○ 결정도면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24 호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결정고시

1. 우리시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을 도시계획법 제 12조제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조제 1항에 의거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제 4

○ 결정조서

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동대문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6. 1. 13

서울특별시장

구 분	시 설 명	위 치	규 모 (㎡)	비 고
신 설	공용의청사	동대문구이문동 258-108	142	이문 2 동사쿠소

○ 결정도면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25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 621('85.9.15) 호로 시설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713('85.10.24) 호에 의거 지적승인 고시된 우리구 암사동 20번지 부근의 암사수원지 진입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도로)시설 계획인가하고 도시계획법 제 25조 및 동법시행령 제 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 공사 4부 및 강동구청 도시

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6. 1. 13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명 : 암사수원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나. 사업시행자 : 강동구암사동 20번지 부근(암사수원지 진입도로)  
다. 사업규모  
도로개설 D=14-35m L=384m  
상수도부설 D=2,200% L=384m  
하수도부설 D=1,350% L=300m  
라. 사업시행기간 : 인가일로부터 '86. 8. 31  
마.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종합건설본부장)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와 전  
 물조서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이  
 의의 권리명세서: 별항  
 사. 시행인가설계도서: 생략

토 지 조 서

순 위	소재지지번	지 목	지 적	면적	소유자 주소 설명		소유권이외 의권리명세
					관	인 주소 설명	
1	강동구암사동 20	전	528.2	192.6	강동구암사동 55번지		
2	21	"	2,145	1,194	광주이씨광릉부원군과종회		
3	27-4	답	1,769	192.4	미 등 기		
4	19	"	1,145	327.5	마포구서교동 247 백종철외 2인		
5	27-2	"	1,911	186.7	강동구암사동 73 김성덕		
6	26	"	899	724.4	" 73 김순산		
7	산 4-1	임	20,178	4,381.9	" 56 양태식		
8	72	전	330	186.8	중구예상동 7-12 서영식		
9	13-1	도로	1,131	54	강동구암사동 55 광주이씨부원군과종회		
10	21-1	"	364	184.7	서 울 시		
11	27-3	답	575	3.5	"		
12	40-5	임	3,453	16.4	강동구암사동 73 김군택		
13	354-4	전	831	40.7	중구저동 2가 재단법인 영락원		
14	354	"	4,772	3,253.5	강동구천호동 233-145 김정찬외 6인		
15	산 40-3	임	27,937	24	강동구암사동 276 양한덕		
16	354-2	전	436	171.3	사단법인 영락원		
17	353-1	답	10	10	강동구천호동 233-145 김정찬외 6인		
18	353-5	전	13	13	용산구한강로 3 가 65-228		
19	27-1	답	0	2.0	한국토지개발공사		
	계			11,159.4	강동구천호동 233-145 김정찬외 6인		

물 건 조 서

소재지지번	물 건 명	구조 및 규격	수 총	소유자 주소 설명		소유권이외 의권리명세
				관	인 주소 설명	
산 4-1	분 묘		3			

◎서울특별시고시제 26 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처가변경  
(기간연기)

- 1. 서울특별시고시 제 135 호('78.4.3) 동고시 제 232 호('78.5.24)로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및 지적고시되고 동 고시제 351 호('78.4.3) 동고시 제 446 호('84.7.31)로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처가 및 시행처가변경된 미림중·여자고등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처가 변경하고 이를 고시한다.
- 2.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6.1.13

서울특별시장

- 가. 사업의 시행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신림동 1557-1 일대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학교) 미림중·여자고등학교
- 다. 사업의 규모 : 시행면적 29,291.6㎡  
연면적 18,763.3㎡
- 라. 사업시행자주소·성명 : 서울특별시

중구수표동 27-1 학교법인 함문학원  
이사장 조성갑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 : '78.4.3

준공(당초) : '85.12.30

(변경) : '86.12.30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권이외의권리의 명세 : 별첨(생략)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 별첨(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27 호

도시계획사업(공용의청사)시행인가

- 1. 서울특별시고시 제 847 호('85.12.13)호 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1 항에 의거 도시계획사업(공용의청사)시행인가하고 같은법 제 24 조 3 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 2.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게는 이고시로 갈음하며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중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6.1.13

서울특별시장

<p>○ 고시내용</p> <p>1. 사업시행지 : 중구신당동 193-29 외 10 필지</p> <p>2.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공용의 청사) 시행인가</p> <p>3. 사업의 명칭 : 시경청사(기동대숙영 시설 신축공사)</p> <p>4. 사업의 규모 : 대지 (24,842.5㎡) 건물연면적 (19,650.1㎡)</p> <p>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p>	<p>6. 전 물 : 별첨</p> <p>7. 사업시행자 : 주소 - 중구 남대문로 4가 17번지 서울특별시 경찰국장</p> <p>8.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87.7.31</p> <p>9. 토지소유자 및 토지수용법 제 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 성명 : 별첨</p> <p>10. 도면생략 :</p>
<p><u>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u></p>	

소재지	지목	지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신당 193-5	대	436	이 동 옥	매매계약 : 남호영
193-6	"	99	김 원 권	근저당권자 : 중소기업은행
193-7	"	288	"	
193-28	"	99	김 의 순	
193-29	"	22,318	국 (전매청)	
193-38	"	33	"	
210	"	268	김 익 신	
211-1	"	443	"	
212-1	"	208	"	
212-2	"	208	김성분, 강명신	
홍인동 159-4	"	442.5	국 (전매청)	
계	11 필	24,842.5		

○ 사용 또는 수용할 건물

소재지	용도	구조	(㎡) 면적(실제)	가 우 대			장 (공부상)		무허가면적 (㎡)	소유자	비고
				구 조	용 도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신당동 193-5	점포	목조/스레트	61	목조/와즙	주택	49.12	임동욱	가등기: 남호명	11.88	임동욱	
신당동 193-5	공장	목조/스레트	369	목조/도단와즙	공장	309.36	임동욱		59.64	임동욱	
신당동 193-28	점포	목조/스레트	24	목조/와즙	주택				96	김익순	
	점포, 주택	목조/스레트	72	목조/와즙						김익순	
		철근 병목									
신당동 193-6	공장	목조/스레트	99	목조/와즙	공장	24.56	김원길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성동지점)	74.44	김원길	
신당동 193-7	공장	목조/스레트	166	"	공장	59.50	김원길		106.50	"	
193-7	"	철근병목 및 스투트	49(1층) 49(2층)	"	창고	49.12	김원길	"	48.88	"	
신당동 193-7	주택	스레트	66	목조/와즙	주택					김성분	
" 212-1											
" 212-1	"	목조/스레트	24	"	"	56.98	김익신		126.06	"	
" 212-1	"	"	84	"	"	4.96	김익신			"	
" 212-1	"	"	16	"	"					"	
신당동 212-2	공장	목조/스레트	114	목조/와즙	주택	60.03	김성분의1인		143.01	김익신	
" 212-2	"	"	94			4.96				"	
신당동 211-1	"	목조/스레트	93	"	"	1층 228.10	김익신			"	
신당동 211-1	"	"	126	"	"	2층 13.22				"	
신당동 211-1	"	"	14						188.93	"	
신당동 210	"	목조/스레트	228(1층)		주택 및	1층 136.53				"	
211-1	창고	목조/세와	53(2층)	목조/와즙	공장	2층 16.53				"	
신당동 210	공장	목조/스레트	6				김익신			"	
신당동 210	"	"	38	목조/스레트	주택	69.79	김익신			"	
"	"	"	95				김익신			"	

◎서울특별시고시제 28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 32 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한다.

1986.1.13

서울특별시장

1. 사업명 : 민영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 영등포구 여의도동 45-15  
동익건설 대표 박성래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  
가. 위치 : 도봉구쌍문동 285-5 외  
19필지  
나. 면적 : 20,324.0㎡  
다. 규모 : 아파트 5층 4동 495세대,

단독주택 1세대  
(상가 3층 1동 및 부대복리시설)  
(중) 아파트 30세대)

4. 사업시행기간 : 1985.11~1987.12.31

◎서울특별시고시제 29 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을 도시계획법 제 12조제 1항 같은법시행령 제 6조제 1항 나무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같은법 제 12조 제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 구청 및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인다.

1986.1.14

서울특별시장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조서

구분	위치	면적	비고
공공공지	도봉구 공릉동 107 일대	2,330㎡	

별첨도면 표시와 같음(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30 호

주택개발제한구역지적승인고시

1. 건설부고시 제 512 호('85.11.12)

및 건설부고시 제 542 호('85.12.9)로 주택개발 제한구역 결정된 구로 제 3 구역의 11개 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6 조 규정에 의하여 지적승

인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  
 국 주택개량과 및 관할구청 주택  
 과와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  
 가. 주택개량 재개발구역 결정 및 변경결정 내역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6.1.14

서울특별시장

구역명	위 치	결 정 (㎡)	변경결정 (㎡)		비 고
			기 정	변 경	
구로 3	구로구구로124번지일원	20,081			전고시제 512호로신설
구로 4	" " 125 "	14,623			"
구로 5	" " 75-1 "	14,800			"
양평 1	영등포양평 23-1 "	13,263			"
신길 4	" 신길 410 "	5,900			"
본동 1	동작본동 455 "		61,494	82,926	전고시제 512호로일부추가
봉천 1	관악봉천 300 "	103,000			전고시제 512호로신설
신림 4	" 신림 808 "		25,200	40,547	전고시제 512호로일부추가
신림 2	" 신림 328산 79 "		37,199	88,744	"
명일	강동명일 209 "	18,400			전고시제 512호로신설
천호 2	" 천호 410 "		9,160	8,851	전고시제 512호로변명
천호 3	" " 410 "		6,970	7,347	"

◎서울특별시고시제 31 호

주택개량재개발사업관리처분  
 계획 변경 인 가

서울특별시 고시제 634 호 ('85.9.24)  
 로 관리처분 계획인가된 가락제 1 구  
 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

시재개발법 제 41 조제 2 항 및 동법시  
 행령 제 58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  
 여 관리처분을 변경인가하고, 동법제  
 41 조 5 항 및 동법시행령 제 58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  
 한다.

1986.1.14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명칭 : 가락제 1구역 주택 개량 재개발사업

2. 시행구역 및 면적  
 가. 시행구역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가락동 175-1번지 일대  
 나. 면적 : 35,456 평방미터

3. 시행자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가. 명칭 : 가락제 1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조합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가락동 455-1번지

4. 분양예정대지 및 건축시설 내역  
 가. 토지 : 35,456 평방미터  
 - 택지 : 35,401.375 " "  
 - 도로 : 54.625 " "  
 나. 건축시설  
 ○ 동 수 : 아파트 7동 838세대 (15층)  
 상가 1동 (지하 1층, 지상 3층)  
 유치원 1동 (지하 1층, 지상 2층)  
 ○ 연면적 : 78,740,546 평방미터

5. 분양대상자별 주소, 성명 : 별첨 (생략)

6.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과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와 가격 : 별첨 변경조서 (생략)

7.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 명세 : 별첨 (생략)

8. 보류지 (보류시설) 명세 및 처분 방법  
 가. 보류지 명세와 추산액 : 별첨 변경조서 (생략)  
 나. 처분방법 : 별도 분양계획 승인을 득하여 처분하고, 사업비의 일부에 충당

◎ 서울특별시고시제 32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1. 서울시고시제 858 호 (85.12.21) 로 변경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도로)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조 및 동법시행령 제 6조의 권한위임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6. 1. 14  
 서울특별시

가.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조서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연장(m)	기 점	종 점	비고
기정	소로	2	8	210	가장동 785-1	마장동 788-2	
변경	"	2	8	116	" 786-1	"	폐지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연장(m)	기 점	중 점	비 고
기정	소로	3	6	142	마장동 787-8	마장동 786-3	
변경	"	3	6	142	"	"	폐지
신설	"	3	4	198	마장동 789-1	마장동 382-1	신설
신설	"	3	4	10.5	마장동 383	마장동 381-6	신설

나. 결정도면 별첨 (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33 호

도시계획사업 (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  
시행 변경 인가

- 서울특별시고시제 434 호 ( 79.10.11 ) 로 도시계획사업 (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 실시계획인가되고 동고시제 339 호 ( 80.10.6 ) 동고시 제 39 호 ( 82.1.30 ) 동고시 제 560 호 ( 82.12.31 ) 동고시제 682 호 ( 83.12.31 ) 및 동고시제 780 호 ( 84.12.24 ) 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된 강남구서초동 261 번지 일대 외교관 공관단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6 조와 동법 시행령 제 6 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5. 12.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 : 강남구서초동 261 번

지 일대

- 사업의종류및명칭 : 도시계획사업 (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 외교관 공관단지
- 사업의 규모 : 대지면적 92,727㎡ ( 28,049.8 평 )
- 사업시행자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장
-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일 : 1980. 1
  - 준공예정일 : 1985.12.31
 변경준공예정일 : 1986.12.31
- 수용 또는 사용할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생략
-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및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34 호

주택 개량재개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

- 도시재개발법 제 17 조 제 1 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 38조 제 1항 7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주택개량·재개발조합 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같은법 제17조 제 2항 및 같은법 제 58조 제 1항 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 및 관악구청 주택과와 봉천제 5구역 재개발조합에 비치한다.

1986. 1. 14

서울특별시장

가. 재개발사업의 명칭 : 주택개량재개발 봉천제 6구역 재개발사업

나. 조합의 명칭 : 주택개량 재개발 봉천제 6구역 재개발조합

다. 시행구역 및 면적

1) 시행구역 : 관악구 봉천동산 23번지 일대

2) 면 적 : 15,391 평방미터

5. 건축규제의 계획

나. 전폐율 규제계획

라.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 관악구 봉천동산 23번지

마. 시행기간 : 인가일로부터 30개월

바. 시행인가일 : '86.1

사. 시행자 : 주택개량 재개발 봉천제 6구역 재개발조합

아. 사용 또는 수용할토지, 건물조서 : 별첨 (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35 호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변경

건설부고시제 131 호 (76.8.21) 로 아파트지구 지정된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서울특별시영동아파트 2지구 (압구정지구) 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 20조제 2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한다.

1986. 1. 15

서울특별시장

○ 지구개발계획의 명칭 : 영동아파트 2지구 (압구정지구) 개발기본계획

○ 지구개발계획 변경내역

구 분	전		후	
	변	경	변	경
연립주택		30%이하		40%이하
저층아파트		25%이하		30%이하
고층아파트		20%이하		25%이하
기타건축물		50%이하		50%이하

◎ 서울특별시고시제 36 호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정류장 : 시내 버스) 변경결정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정류장 : 시내버스)을 도시계획법 제 12 조제 1 항 및 제 13 조 2 항 같은법 시행령 제 6 조 1 항 1 호 나 목 및 마 목 규정에 의거 결정 및

가. 시설 조서

- 지적승인하고 도시계획법 제 12 조 4 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서류는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및 도시정비과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6. 1. 15

서울특별시장

구분	시설명	위치	규모(㎡)	비고
기정	여객자동차정류장	봉천동 1620-35 외 6필지	1,005.50	폐지
변경	"	"	0	(신촌교통)

나. 도면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37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장) 지적승인

1. 건설부고시제 561 호 (85.12.18)로 결정고시된 우리시 도시계획 구역내 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 1 항 1 호 마(1)의 권한위

가. 지적승인조서

○ 도로

- 임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시민봉사실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6. 1. 15

서울특별시장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연장(m)	시점	종점	비고
신설	광로	1	80	45-55	1,100	풍납동 388	이동 340	
"	대로	2	72	30-42	730	풍납동	구의동	올림픽대교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시점	종점	비고
기정	광로	1	76	50	220	구의동 498	강변 1로	광장신설에 따른 제외
제지 신설	"	"	"	"	"	"	"	"
	중로	1	300	20	300	풍납동 470	풍납동 330	

○ 광 장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m <sup>2</sup> )	비고
신설	교통광장	강동구풍납동 469 일대	79,830	입체시설
"	"	성동구광장동 495 일대	50,000	"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지적승인 도면: 별첨과 같음(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공고제 15 호

도시계획사업(하수) 실시계획공람공고

1. 아래와 같은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제 25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 27의 2 규정에 의거 공

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

2.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의견이 있는분은 공람기간내에 공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기 바란다.

1986. 1. 13

서울특별시장

가. 개요

도시계획시설결정	지적승인	사업명	사업의종류및규모	사업기간
서울특별시고시 제 350 호 (85.5.25)	서울시고시 제 362 호 (85. 6. 1)	방화동 272의 4 - 210 의 5 간 하수도공사	하수도석축수로 H = 2 m L = 1,794 m	85.2.3 - 86.2.28

나. 사업의시행자: 서울특별시장

조서(도서생략)

라. 공람기간: 86.1 - 86. . . .

다. 사용할토지 및 건물조서: 별첨

( 14 일간 )

토 지 조 서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명 세
			관 계 인 주 소 성 명		
방화동 219-2	구 거	149	목동 264의 3	양동농지개량조합	
220의 1	답	117×1/3	성북구성북동 111-7		
218의 2	구 거	126	목동 264의 3	"	
217의 3	"	86	"	"	
210의 8	답	7	내발산동 571	유 권 상	

◎서울특별시공고제 16 호

공공하수도사용개시공고및  
관계도면공람

1. 하수도법 제 6조(제 13조)에 의거 공공하수도 설치가 완료되었기 하수도법 제 9조의 규정에 의거 15일간 일반인에게 공람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별도 통지를 생략하고 이 공고로 갈음한다.

1986. 1. 13.

서울특별시장

공고 및 공람 개요

1. 사용개시년월일 : 별첨
2. 배수구역 : 별첨

3. 사용을 개시하려는 공공하수도의 위치 : 별첨
4. 사용을 개시하려는 공공하수도의 합류식 또는 분류식의 구별 : 별첨

◎서울특별시공고제 17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시행공람공고

1.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서류의 공람 및 의견을 청취코저 도시계획법 제 25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7조 2에 의하여 14일간 일반인에게 보인다.
2.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본 사업에 따른 의견은 공람기간내에 제출하기 바란다.

1986. 1. 13.

서울특별시장

<p style="text-align: center;"><b>공 략 개 요</b></p> <p>1. 시행지 : 성동구행당동 117번지, 139번지, 140번지, 141번지</p> <p>2. 규 모 : 폭 8m, 길이 220m (도로개설)</p> <p>3. 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p> <p>4. 공람기간 : 1986년 1월 13일 ~ ~ 1986년 1월 26일 (14일간)</p> <p>5. 기타문의사항 : 성동구청 토목과 (445-8704)</p>	<p style="text-align: center;"><b>◎서울특별시공고제 19호</b></p> <p style="text-align: center;"><b>도로공사 계획 공고</b></p> <p>1. 도로법시행령 제24조3항 및 도로법시행규칙 제17조2항에 의거 도로공사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6. 1. 13. 서울특별시</p>
---	---

가. 도로공사 계획조서

도로의종류 및 노선명	공 사 명	공사구 간	시행자	공 사 기 간
소로 3류	인왕중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홍제동 280-2 ~ 8-77 간	서대문구청	'85.12 ~ '86.6.30
소로 3류	홍은3동 논골소방 도로개설공사	홍은동 204-32 ~ 190-26 간	"	'85.12 ~ '86.7.20

<p>나. 관계도면 : 생략 위와같이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오니 본 구간내 지하매설물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 전기) 등 유관사업을 시행코자 하는자는 본 공사기간중에 시행토록 하기 바란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서울특별시공고제 20호</b></p> <p style="text-align: center;"><b>도시계획사업 (유통업무설비-화물자동차정류장) 시행완료공고</b></p> <p>1. 서울특별시고시 제 89호 (84.2.20)</p>	<p>로 사업시행 허가된 강남구 양재동 536의 3외 37필지상 도시계획사업 (유통업무설비-화물자동차정류장)에 대하여 사업완료 되었기에 도시계획법 제 57조의 2 및 제 85조와 동법시행령 제 6조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인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6. 1. 13. 서울특별시</p>
--	--

<p>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강남구 양재동 536의 3외 37필지 (개포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 B4구획 1호)</p> <p>나. 사업의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유통업무설비 - 화물자동차정류장) 시행</p> <p>다. 사업시행자 : 부산시동구범일동 252-767 천일정기화물자동차(주) 박 남 도</p> <p>라. 사업기간 : '84.2.20-'86.6.30</p> <p>마. 사업의 규모</p> <p>1) 시설면적 - 25,623.8㎡</p> <p>2) 건축면적 - 3,996.35㎡</p> <p>3) 건축연면적 - 4,290.55㎡</p>	<p>바. 허가근거 : 서울특별시고시 제 89호 (84.2.20)</p> <p>사. 준공도면 : 별첨 (생략)</p> <p><b>◎서울특별시공고제 22 호</b></p> <p style="text-align: center;"><b>도 급 공 사 계 획</b></p> <p>1. 도로법시행령 제 24조의 3항에 의거 도로공사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p> <p>2.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토목과에 비치 열람케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6. 1.14. 서울특별시장</p>
---	---

가. 도로공사 계획조서

노선명	공사구간	공사명	시행자	공사기간
서울특별시도	봉천동산 101~	봉천동 산북 도로개설	관악구청장	86.2-86.12
"	봉천동 7	남곡길 확장공사	"	"
"	신림 11동 1474~		"	
"	신림 7동사무소		"	
"	봉천 11동 196의 23-40	봉천동 196의 23 도로정비	"	86.2-86.6
"	신림 3동 706-704	신림 3동 706-704간 도로정비	"	"
"	봉천 11동 1510의 1-62	봉천 11동교체단지난간 설치외 2개소 도로정비	"	"
"	봉천 6동 852의 4-1666	봉천 6동 852의 4-1666 도로정비	"	"
"	신림 3동 598-610	신림 3동 610 법원단지 도로정비	"	"
"	봉천 1동 728-970	봉천동 728-970간 도로정비	"	"

노선명	공사구간	공사명	시행자	공사기간
서울특별시	신림 7동 673의 52-68	신림 7동 난화국교 진입로개설	관악구청장	86.2-86.6
"	봉천시장 - 봉천사거리	관악로 가로등신설	"	"
"	관악구 25개동	관내주택가 보안등설치	"	"
"	봉천 6동 21-25	봉천 6동 21-25 간 하수도	"	"
"	신림 3동 661번지	신림 3동 661 하수도	"	"
"	봉천본동 926	봉천본동 926 일대 하수도	"	"
"	신림 1동 1622, 1628, 1613	신림 1동 1622일대 하수도	"	"
"	봉천 9동 940-5	봉천 9동 940-5 하수도	"	"
"	봉천 1동 969의 43-670	봉천 1동 969의 43 주변 하수도	"	"
"	남현동 602의 171-270	남현동 602의 171 주변 하수도	"	"
"	신림 3동 652	신림 3동 652일대 하수도	"	"
"	신림 4동 479-14	신림 4동 479	"	"
"	봉천동 36의 14-1671의 4	봉천 6동 봉천국교 주변 도로정비	"	85.12-86.4
"	봉천 10동 871	봉천 10동 871 주변 하수도	"	"

◎서울특별시공고제 23 호

도시계획입안공람공고 ( 변경 )

1. 강남구 도시계획입안 도시계획시설 ( 변경 ) 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법 제 16 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 14 조의 2 규정에 의거 공고하여 14 일간 일반인에게 보인다.

2. 본 도시계획입안에 대한 관계도서는 아래장소에 비치하여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

가. 공람장소 : 강남구청 도시정비과  
나. 공람기간 : 86.1.16-86.1.30

1986. 1. 15.  
서울특별시장

○ 도시계획입안

1. 도시계획시설 ( 시장 ) 변경 ( 폐지 )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폐지	도시계획시설 ( 시장 )	강남구도곡동 506-12	3,301.9 ㎡	

◎서울특별시공고제 24 호

도시계획사업 (도매시장) 시행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51 호 ( '75. 4.21 ) 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강남구 서초동 산 119 번지 ( 가, 나 ) 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도매시장) 시행허가코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 한다.

다. 사업의 규모

2.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6. 1. 15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동 산 119 번지 ( 가, 나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도매시장) 시행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도	비고
11,235㎡	2,324.22㎡	9,296.88㎡	판매시설 - 8,103.89㎡ 기계실, 전기실 - 273.73㎡ 기타 - 919.26㎡	지하 1 층 - 지상 3 층 ( 2 동 ) 지하 1 층 화장실, 계단

다. 사업시행자 -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48-2 신세훈

마. 사업예정기간 - '86.2 ~ '86.12.31.

바.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생략)

아.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 (생략)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도시정비과로 문의바란다. (설계도서

생략)

◎서울특별시공고제 26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완료공고

1. 서울시고시 제 285 호 ( '84.5.17 ) 로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되고 같은 고시 제 142 호 ( '85. 3.6 ) 로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변경된 지역에 대하여 공사 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57 조 2, 제 85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 조의



권한 위임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6.1.15

서울특별시장

- 1) 사업의시행지: 서울시 성동구 중곡동 산3-18일대
- 2)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사업(학교)  
명칭: 학교법인 대원학원 시설 확충
- 3) 사업의 규모:  
시행대지면적 24,686  
건축면적(건물1층, 5층) 4,889.25
- 4) 사업 시행자: 학교법인 대원학원  
이사장 이경호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일:  
착수 - '84.5.17  
준공 - '85.12.27
- 6) 위치 및 계획평면도면: 별첨생략
- 7) 준공도면: 별첨생략
- 8) 기타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성동구청 도시정비과(445-8705)로 문의바란다.

◎서울특별시공고제 27 호

도시계획사업(하천개수)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703호('85.

10.17)로 시설결정 및 지축승인된 강동구 오금동 일대 올림픽선수기자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내 하천개수공사의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 25조 및 동법 제 25조의 2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에게 보인다.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3. 관계도서는 올림픽준비단 토목담당관실 및 강동구청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가. 공람장소: 강동구청(건설관리과), 올림픽준비단(토목담당관실)

나. 공람공고기간: '86.1.16 ~ '86.1.30

1986. 1.15

서울특별시장

- 공 랑 개 요 -

1. 사업시행자: 강동구 이동 99-1 ~ 오금동 36

오금동 374-2 ~ 169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도시계획사업(하천개수)

○명칭: 올림픽공원 제10공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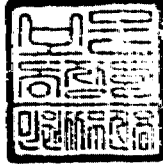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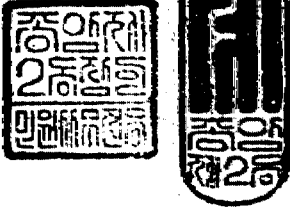



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장

<p>4. 사업개요 : 하천개수  <math>B = 30-70 m, L = 2,189 m</math></p> <p>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85.8.1 ~ '86.6.30</p> <p>6. 수용 또는 사용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명세 : 생략</p> <p>7.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판제인의 주소, 성명 : 생략</p> <p>8. 기타사항 : 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상기 공람장소에 제출 또는 문의하기 바란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서울특별시공고제 28 호</b></p>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종 전기공사사업체 실효 처분</p> <p>전기공사사업법 제 30 조 5 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 제 2 종 전기공사사업 면허소지업체에 대하여 그 면허를 실효 처분하였기 전기공사사업법 제 42 조 규정에 의거 공고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6. 1.16 서울특별시장</p>
--	--

면허번호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처분	사유
580	경서기업사	서울시 성북구 장위 2 동 66-119 번지	임정호	면허실효	전기공사사업법 제 30 조 5 항 (공사업폐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10px;"> <p><b>구 청 공 고</b></p> </div> <p><b>◎성북구공고제 3 호</b></p> <p style="text-align: center;">직 인 개 각 공 고</p> <p>서울특별시 관인규칙제 3 조 및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동 민원사무전용 동장 직인을 개각하고</p>	<p>구직인을 폐기하였기 동 규칙 제 6 조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6. 1.13 성북구청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자사용개시일 : 1986.1.14</li> <li>2. 폐기년월일 : 1986.1.13</li> <li>3. 개각및폐기동 : 삼성 2 동외 6 개동</li> <li>4. 직인인영 : 별첨</li> </ol>
---	---

인 영							
	삼선 2 동직인 및 계인		보문동직인		청능 2 동직인 및 계인		
인 영							
	진읍 3 동직인		종암 2 동직인 및 계인		하월곡 3 동직		
							
공인명		진읍 3 동직인		하월곡 3 동직		석관 2 동직인 및 계인	
<b>사 령</b>							
◎ 1986 년 1 월 14 일자					령제 13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서	직 위	직 급			
유상자	의약과 근무물 명함. 가족보건제장에 포함.	의약과	간호사업제장	지방간호기과			
령제 14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서	직 위	직 급			
이원근	아동병원장 직무대리	보건사회국	의약과장	지방의무기정			

명제 15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	급
양승연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시립대학	지방별정직 8급상당	
명제 16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	급
이문재	지하철공사파견근무를명함. (1986.1.5 ~ 1987.1.4)	내무국	지방부이사관	
서울특별시 명제 17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	급
백상승	감사관실 감사관에 포함	교통국장	이사관	대통령
김인동	내무국장에 포함	감사관실감사관	"	"
최종무	도시계획국장에 포함	건설관리국장	시설부기감	"
우명규	시설기감에 임함	목동지구	지방시설기감	"
	건설관리국장에 포함	개발사업소장		
이충우	부이사관에 임함	서울대공원	지방부이사관	"
	교통국장에 포함	관리사업소		
김완중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출에 명함. 지방이사관에 임함.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에 포함.	중구청장	이사관	"
				서울특별시
배문환	중로구청장에 포함.	내무국장	이사관	대통령
변의정	중구청장에 포함.	중로구청장	"	"
박종우	동대문구청장에 포함.	동작구청장	부이사관	"
김의재	부이사관에 임함. 동작구청장에 포함.	서울특별시	지방부이사관	"
이진호	부이사관에 임함. 관악구청장에 포함.	세종문화회관 관장	"	"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발령청
김진욱 이원중	강동구청장에 보함 서울특별시 근무를 명함 내무국 국방대학원 파견근무를명 함('86.1.10 ~ '87.1.9)	동대문구청장 강동구청장	이사관	대통령 서울특별시장 (86.1.10)
김인식	서울특별시 근무를 명함 내무국 국방대학원 파견근무를명함 ( '86.1.10 ~ '87.1.9 )	도시계획국장	시설기감	대통령 서울특별시장 (86.1.10)
주돈희	지방시설부 기감에 임함 목동지구재개발사업소장에 보함	도봉구부청장	지방부이사관	서울특별시장
반충남	새중문화회관장에 보함	내무국	지방부이사관	

◎ 1986년 1월 15일자.

병제 18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김용호 구본균	주택개발과 동작구 파견 ( 86.1.15 ~ 86.6.30 )	죽도수원지사무소 올림픽건축담당관	지방토목기사 지방건축기사
김선방	올림픽건축담당관 파견 ( 86.1.15 ~ 86.6.30 )	종합건설본부	지방건축기사
박우성			지방건축기원보

서울특별시장